

1. 5-06-0601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p> <p>여신거래신청서(기업용) (포괄한도용)</p> <p>(생 략)</p> <p>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p> <p>본인은 ~ (이하생략)</p> <p>제3조 이자율의 변동</p> <p>①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p> <p>1.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p> <p>2. 이 약정서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로 하며,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로 합니다.</p> <p>②제1항의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종 대출상당일이 없는</p>	<p>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p> <p>여신거래신청서(기업용) (포괄한도용)</p> <p>(좌 등)</p> <p>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p> <p>본인은 ~ (이하생략)</p> <p>제3조 이자율의 변동</p> <p>①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p> <p>1.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p> <p>2. 이 약정서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로 하며,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로 하고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합니다.</p> <p>②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종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p>	<p>-단기코픽스연동 변동금리대출 신설에 따른 단기코픽스금리 추가</p>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기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중도상환수수료

① (생 락)

② (생 락)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6 (생 락)
(신 설)

제4조 중도상환수수료

① (좌 등)

② (좌 등)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6 (좌 등)
7.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5조 ~ 제16조

(생 락)

추가약정서(기업용)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

(생 락)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생 락)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제4조 ~ 제16조

(좌 등)

추가약정서(기업용)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

(좌 등)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좌 등)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면제사유 신설

(생 략)	(좌 등)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	
(생 략)	(좌 등)	

2. 시행일 : 2013년 4월 8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일(포함) 이후 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 승인 건부터 적용